

충청북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
번
호

228

제출년월일 : 1993. 4.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현행조례 제2조 제1항 제1호중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로 규정한 면제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 면제대상 법조문 정리

현행조례 제2조 제1항 제1호중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공단지의 개발토지, 시설등을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분양받은 자"로 면제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

나. 면제세목 : 취득세, 등록세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9조

기타 참고자료 (별첨)

충청북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 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중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공단지의 개발토지, 시설등을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분양받은 자"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